#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가. 법 률

헌법재판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규정을 대상으로 한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현재 1992. 10. 31. 92헌바42, 판례집 4, 708, 710). 또한 일반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이아니고, 법원의 구속에 관한 구체적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재판자체를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제청이 일반법원에서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1994.9.6. 94헌비36, 판례집 6-2, 334, 337).

#### 나. '유효'한 법률

법률은 이미 공포된 것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위헌심판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이어야 한다. 다만,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침해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89.12.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47).

### 다.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법률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판례집 9-2, 607, 618).

#### 라. 헌법의 개별규정

헌법의 개별규정이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41조 제1항

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아니라고 하였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5).